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11. 9. 22.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9월 15일

나. 제출자 : 김화영 의원 외 4인

다. 회부일자 : 2011년 9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9월 19일 제16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화영 의원)

가. 제안이유

-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 새로 신설된 조례안의 예고제와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절차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신설 규정을 반영하고, 의원의 발언 및 질문과 관련한 별지 서식을 신설하며, 의회 운영상 보완과 변경이 바람직한 규정과 기타 정비가 필요한 조문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 등을 대비하여 임시회의 경우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임기 초 의원 선서 조문 중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을 「국회법」 등을 참고하여 수정함.(안 제5조)
- 「지방자치법」 개정 및 위임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예고’에 관한 사항 신설함.(안 제19조의5)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24조의3)
-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개선하고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함.(안 제32조의2제2항)
- ‘구정질문 요지서 송부시한’을 기존에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를 ‘48시간 전까지’로 변경하고, ‘구정질문 요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설함.(안 제65조의2제2항)
- ‘서면질문서’ 및 ‘서면질문 답변서’를 서식 별지 제3,4호서식으로 정함.(안 제66조제1항 및 제2항)
- 윤리심사의 특성에 비추어 의원의 자격심사 및 자격상실 의결에 관하여 다루는 제7장과 구별하고, 제9장 징계에 관한 부분으로 이관하고자 윤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0조)
- 공개된 회의 방청을 허가 받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관련 조항 신설함.(안 제77조제2항)
- 회의규칙 ‘제9장 징계’ 부분에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9조~제83조)
-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 기존에 초일을 산입하도록 한 규정이 맞지 않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함.(안 제8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현영)

- 이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1. 7. 14일 개정되어 2011. 10.15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4조에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하여야 하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임시회의 경우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
- 안 제5조에 의원 선서문을 「국회법」등을 참고하여 자연스런 표현으로 문구를 수정함.
- 안 제19조의5에 조례안 예고 규정을 신설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제외한 우리구의회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으로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등을 게시판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4조의3에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신설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위원회의 안전심사 절차를 준용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
- 안 제65조의2제2항을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준비 등을 위하여 국회와 서울시 및 일부 타 구의회 사례에 따라 ‘구정질문 요지서 송부시한’을 기존의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를 ‘48시간 전까지’로 개정함.
- 안 제77조제2항에 공개된 회의 방청을 허가 받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

도록 관련 규정 신설함.

- 안 제79조부터 제83조까지에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안 제84조를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기존에 초일을 산입하도록 한 규정을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함.
- 별지 1호에서 4호까지에 ‘5분 자유발언 신청서’, ‘구정질문 요지서’, ‘서면질문서’, ‘서면질문 답변서’ 서식을 정하여 신설함.
-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현재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과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도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우리구의회 회의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함으로써 우리구의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의 사항은 오자와 띄어쓰기를 바로 고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바

로 고친 것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자구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80
----------	----

발의연월일 : 2011년 9월 2일

발 의 자 : 김화영 의원 외 4인

1. 제안이유

2011.7.14 개정·공포(2011.10.15 시행 예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상위법령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신설하고, 회의 규칙 중 필요한 별지서식을 신설하며, 그 밖에 의회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함. 또한 오자와 띄어쓰기를 바로 고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정에 맞게 기존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 등을 대비하여 임시회의 경우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연하고 능률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함.(안 제4조)
- 나. 임기 초 의원 선서 조문 중 자연스럽지 않은 표현을 「국회법」 등을 참고하여 수정함.(안 제5조)
- 다. 「지방자치법」 개정 및 위임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의 예고’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참고하여 신설함.(안 제19조의5)
- 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민청구조례안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을 회의 규칙에 반영하여 신설함.(안 제24조의3)
- 마. 그 동안 임의로 작성된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사용하던 관행을 개선하고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정하여 신설함.(안 제32조의2제2항)
- 바. ‘결산안’ 을 ‘결산’ 으로 정정함.(안 제64조)

- 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준비 등을 위해 국회와 서울시 및 일부 타 구의회 사례를 참고하여 '구정질문 요지서 송부시한'을 기존에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를 '48시간 전까지'로 변경하고, '구정질문 요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설함.(안 제65조의2제2항)
- 아. '서면질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서면질문 답변서'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설하여 정함.(안 제66조제1항 및 제2항)
- 자. 윤리심사의 특성에 비추어 의원의 자격심사 및 자격상실 의결에 관하여 다루는 제7장과 구별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참고하여 제9장 징계에 관한 부분으로 이관하고자 윤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0조)
- 차.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이라는 조 제목이 권위적인 느낌을 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참고하여 '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으로 변경함.(안 제75조)
- 카. 「지방자치법」 제65조제2항이 신설되어 공개된 회의 방청을 허가 받은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회의 규칙에도 반영·신설함.(안 제77조제2항)
- 타. 회의규칙 '제9장 징계' 부분에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79조~제83조)
- 파.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을 간결하게 정비하여 이해도를 높이고자 각 호를 신설하여 해당 경우별로 구분함.(안 제80조제1항)
- 하. 「지방자치법」에는 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의회운영과 관련된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따라야 하는 바, 기존에 초일을 산입하도록 한 규정이 맞지 않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개정함.(안 제8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65조제2항, 제66조의2, 제7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를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등록)”을 “(의원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의석배정)”을 “(의석 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이를 정한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 의장이 이를”을 “경우에는 의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선거후”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로, “사무국장”을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로, “임의로”를 “임시로”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의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 경우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영등포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영등포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제2항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7조제2항 중 “의원 총선거후”를 “총선거 후 처음”으로,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을 “부의장을 새로 선출한 날의 전날”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를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로 하고, 같은 조 중 “대행”을 “대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언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를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휴회중이라도 영등포구청장”를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로, “인정될”을 “인정할”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집회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를 “집회 후 즉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본회의의 의결로”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법 제63조 제1항”을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으로, “달하지 못할”을 “미달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의중”을 “회의 중”으로, “달하지 못할”을 “미달될”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작성에 있어서는”을 “작성의 경우에는”으로, “의장이 이를”을 “의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를 “긴급하다고”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재적인원 5분의 1이상”을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의안과 제출, 발의)”를 “(의안의 제출·발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폐회 또는 휴회중”을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소관상임위원회”를 “소관 상임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2 본문 중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을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로”로 한다.

제19조의3 중 “이유없이 정한 기간내에”를 “이유 없이 그 기간에”로, “아니한 때에는”을 “못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위원회의 제출의안)”을 “(위원회의 제안)”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이를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조례안 예고)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20조의 제목“(동회의 의제성립)”을“(동회의 의제 성립)”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동의자외 1인”을 “동의자 외 1명”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소관사항외의”를 “소관 사항 외의”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을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의안, 동회의 철회)”를“(의안·동회의 철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언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찬성자 3분의 2이상”을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안건이”를 “의안이”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안전심의)”를“(안전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심의함에 있어서”를 “심의하는 경우”로, “질의, 토론”을 “질의·토론”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 안전에 대하여는”을 “않은 안전은”으로, “안전에 대하여는”을 “안전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충실한 취지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제25조 중 “저축”을 “불일치”로, “기타의 정리를”을 “그 밖의 정리가”로 한다.

제26조 중 “의회”를 “본회의”로, “이를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직접관계”를 “직접 관계”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를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등단하도록”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로 한다.

제29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의제외 발언의 금지)”를 “(의제 외 발언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0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로, “의원에 대하여”를 “의원에게”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발언회수의 제한)”을 “(발언횟수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부분에 대하여는”을 “부분은”으로, “범위안에서 이를”을 “범위에서”로 한다.

제32조의2제1항 중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를 “심의 중인 의안 및 청원과 그 밖의”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5분 이내”를 “5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늦어도 본회의 개의 30분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본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발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 1호서식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 중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발언자수와”를 “않는 범위에서 발언자 수와”로, “의한”을 “대한”으로, “등을”을 “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일”을 “그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의중에”를 “인정하면 개의 중에”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가급적”을 “될 수 있으면”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의장의 토론참가)”를 “(의장의 토론 참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해”를 “따라”로 한다.

제36조제2항 본문 중 “인”을 “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를 “질의나 토론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때에는”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8조 중 본문 앞의 “①”을 삭제하고,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9조 중 “표결에 있어서”를 “표결하는 경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필요시”를 “필요할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약간인의”을 “몇 명의”로, “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점검”을 “점검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의하여”를 “각 호에 따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반”을 “모든”으로, 같은 항 제11호 중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으로 한다.”를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기타 본회의”를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의장·의장을”을 “의장, 의장을”로, “부의장·임시의장과”를 “부의장, 임시의장과”로, “매회기”를 “매 회기”로, “인”을 “명”으로, “서명·날인”을 각각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며, “한회기”를 “한 회기”로 한다.

제46조의 제목“(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을“(자구의 바로 고침과 이의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의원과 공무원 기타”를 “의원 및 공무원과 그 밖의”로, “전자임시”를 “전자 임시”로, “영등포구의회”를 “의회”로, “자구 정정”을 “자구의 바로 고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정에”을 “바로 고침에”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을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로 한다.

제47조제1항 단서 중 “그러나”를 “다만,”으로, “안녕 질서유지”를 “안녕질서 유지”로, “관하여는”를 “관해서는”으로, “이를 배부”를 “배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단서에 따라”로, “신청한”을 “신청하였을”로,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없으면 의장은 거절해서는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 허가받을”을 “따라 허가 받을”으로,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전재·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은 공포되어서는 아니된다”를 “을 공포해서는 안 된다”로 한다.

제47조제6항 중 “방법 등 기타”를 “방법과 그 밖의”로 한다.

제49조의 제목“(본회의중 위원회 개최)”를“(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로 하고, 같은 조 중 “본회의중”을 “본회의 중”으로 한다.

제50조 중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자의 1인”을 “동의자의 1명”으로 한다.

제50조의2 중 “조례안 기타”를 “조례안과 그 밖의”로, “이때”를 “이 때”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심사함에 있어서”를 “심사하는 경우”로,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를 “전문위원의”로, “질의, 토론”을 “질의·토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를 “심사”로, “대하여는”를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을 “충실한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구청장을”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동일의제에”를 “같은 의제에”로, “회수”를 “횃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4조제1항 중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54조의2제2항 중 “명시”를 “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전문지식을 요하는”을 “전문지식이 필요한”으로, “공청회를”을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 기타”를 “경비와 그 밖의”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를 “심사경과 및 결과와 그 밖의”로, “서면으로”를 “서면(이하 이 조에서 “심사보고서”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보고서에는”을 “심사보고서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요청이 있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보고서”를 “심사보고서”로, “되기전”을 “되기 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을 “긴급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소관위원회”를 “소관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기타 위원회”를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에서의”를 “제4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로, “기록은”을 “기록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된다”를 “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를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로 한다.

제59조의 제목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를 “(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회의록 기타”를 “회의록과 그 밖의”로, “열람요구가”를 “열람·대출 요구가”로,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을 “심사 또는 감사·조사에 지장이 없으면”으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해서는 안 된다.

제5장의 제목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예산안과 결산 심사”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때에는”을 “때에는 본회의에서”로,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를 “소관 상임위원회에”로, “소관상임위원회는”을 “소관 상임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첨부하여 이를”을 “첨부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를 “소관 상임위원회에”로, “소관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를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로, “아니한 때에는”을 “않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1조 중 “1이상의”를 “1 이상의”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예산의 각 부분별로 회의에”를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본회의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안의 각 부문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예산안의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3조 중 “의회의”를 “본회의의”로,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64조의 제목“(결산안의 심사)”를“(결산의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산안”을 “결산”으로,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를 “소관 상임위원회에”로, “소관상임위원회는”을 “소관 상임위원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첨부하여 이를”을 “첨부하여”로, “회부하여 종합심사케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를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결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를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으로 한다.

제65조의 제목“(구청장 등의 출석요구)”를“(구청장 등의 출석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본회의는 그”를 “의회는 본회의의”로, “관계공무원의”를 “관계 공무원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이상”을 “1 이상”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는 그”를 “위원회는 위원회의”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65조의2제1항 중 “회기중”을 “회기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질문 요지서를”을 “질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구정질문 요지서를”으로, “이를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를 “구정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로, “질문자수와 질문순서를”을 “질문순서를”로, “개의전”을 “개의 전”으로 한다.

제65조의2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면”으로, “이때 의원 1인의”를 “이 때 의원 1명의”로, “제32조제1항의 규정에도”를 “제32조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관국장”을 “소관 국장”으로, “공무원이 답변하여야 하며”를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구청장 등”이라 한다)이 답변하여야 하며,”로,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관계공무원으로”를 “관계 공무원으로”로, “대리출석·답변하게”를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질문서를”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작성하여”로, “지체없이 이를”을 “지체 없이 서면질문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질문서”를 “서면질문서”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를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질문 답변서”로, “기간내에”를 “기간에”로, “기한을”을 “기한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로 한다.

제67조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의원의 청가·결석·사직 및 윤리·자격심사”를 “의원의 청가·결석·사직 및 자격심사”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을 “경우에는 결석신고서를, 못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결석에 관한”을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을 “사직하려면”으로, “서명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토론없이”를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폐회중”을 “폐회 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79조에 따라”로, “있을 때,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을 “있을 때에는”으로, “부분을”을 “복사본을”로, “송달하여”를 “송달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를 “질병과 그밖의 사고로 인하여 제1항의 기일 내에”로 한다.

제71조의 제목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을 “(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답변서를”을 “피심의원의 답변서를”로, “회부한다”를 “회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피심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70조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위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제1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를 “윤리특별위원회의”로, “출석,”을 “출석하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출석·발언하게”를 “출석하여 발언하게”로 한다.

제73조제1항 본문 중 “필요한 때”를 “필요한 경우”로, “언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할 때에는”을 “긴급한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경호에 관한”을 “경호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장안에서 다음과”를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와”로,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해서는 안 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언동”을 “행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간행물 기타”를 “간행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제74조제1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문란시키는”을 “문란하게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그날의 회의에서”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 회의장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나 제지 또는 발언취소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76조 중 “회의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를 “회의장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과 그 밖의”로, “자외에는”을 “자 외에는”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허가한다”를 “허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방청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8조제1항 중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를 “한정하여 회의장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징 계”를 “윤리심사와 징계”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징계의 요구와 회부)”를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86조에”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86조에”로, “때에는 이를”을 “경우에는”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9조제2항 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을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로, “징계사유를”을 “그 사유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를 “법 제83조에 따라”로, “요하지 아니하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로, “청구서”를 “요구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징계요구”를 “윤리심사 요구 또는 징계 요구”로, “의장은 이를”을 “의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도”를 “제4항에도”로, “징계대상행위”를 “징계대상자의 행위”로,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의 부의 시한은 제80조제1항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시한과 같다.”로 한다.

제80조의 제목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을 “(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일 이내(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2. 제79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79조제4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서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제80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 요구 또는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제2항 단서 중 “폐회기간중에”를 “폐회기간 중에”로, “차기회의의 집회일로부터 3일이내에”를 “다음 회기 회의의 집회날부터 3일 이내에”로 한다.

제81조의 제목“(의사의 비공개)”를“(징계 등 회의의 비공개)”로 하고, 같은 조 중 “징계”를 “윤리심사 또는 징계”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을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는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의 제목“(징계의 의결과 선포)”를“(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징계”를 “윤리심사”로, “때에는 지체없이”를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로, “이를 의결하여야”를 “의결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8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기간의 계산)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5조 중 “규칙외에”를 “규칙 외에”로 하고, “저촉되지”를 “불일치되지”로 하며,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정질문 요지서

질문의원	성 명		
	소속 위원회	위원회	
질문 회기	제()회 영등포구의회 임시(정례)회 ()차 본회의 (20 년 월 일)		
질문대상자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등으로 기재		
질문 방식	일괄질문·일괄답변 () 일문일답 () ※ 선택 괄호안에 “○” 표시	소요시간	분
질문 요지	※ 질문 요지가 많을 경우 별지 붙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2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의원 :		(인·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서 면 질 문 서

신청의원	성 명	
	소속 위원회	위원회
질문대상자	영등포구청장	
질문내용	※ 질문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붙임	
<p>「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서면질문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출의원 : (인·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p>		

[별지 제4호서식]

서면질문 답변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서면질문의원	성 명		
	소속 위원회	위원회	
답변서 제출자	국·소장 ○○○ (인)	소관부서	
질문 요지 :			
답변내용 :			
※ 답변내용 및 자료가 많을 경우 별지 붙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 -----.</p>
<p>제2조(등록)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p>	<p>제2조(의원 등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에 제시하고 의원 등록하여야 한다.</p>
<p>제3조(의석배정) ①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p> <p>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p>	<p>제3조(의석 배정) ① ----- ----- --- 정한다. ----- ----- 경우에는 의장이 -----.</p> <p>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p>

구 순서에 따라 임의로 정한다.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신 설>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영등포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여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영등포구 구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장, 부의장 선거) ① (생략)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 의회사
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이 ----- 임시로 -----.

제4조(개회식)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
----- 다만, 임시회의 경우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의 경우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제5조(선서) -----
-----.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영등포구민의 권익과 복리 증진 및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영등포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6조(의장, 부의장 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

----- 명 -----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생략)

④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7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생략)

②의원 총선거후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9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

----- 명 -----

--.

③ (현행과 같음)

④ 부의장의 선거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제7조(의장, 부의장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총선거 후 처음 -----

-- 부의장을 새로 선출한 날의 전일 -----.

제9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

----- 대리 ---.

제10조(의장, 부의장의 사임) ①

받아 -----.

② ----- 본

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2조(휴회) ① (생략)

② 휴회중이라도 영등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3조(회기) ①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휴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회의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④ (생략)

제15조(의사일정) ① (생략)

회의에서 토론 없이 -----.

제12조(휴회) ① (현행과 같음)

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 -----
----- 인정할 -----
----- 1 이상 -----
-----.

제13조(회기) ① ----- 집회 후 즉시 본회의의 의결로 정하되 본회의의 의결로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1조에 따른 -----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
----- 미달될 -----
-----.

③ 회의 중 ----- 미달될 -----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의사일정) ① (현행과 같음)

②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인 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8조(의안과 제출, 발의) (생략)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위원에게

음)

② ----- 작성의 경우에는 ----- 의장이 -----.

③ ----- 긴급하다고 -----.

제16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 원 5분의 1 이상 ----- 대 해서는 -----.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현행과 같음)

제19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9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9조의3(심사기간)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없이 정한 기간내에 심사를

소관 상임위원회

. 폐회 중 또는 휴회 중

②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제19조의2(특별위원회 회부) ---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로

제19조의3(심사기간) -----

이유 없이 그 기간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
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9조의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운영위원회와 협
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
부할 수 있다.

<신 설>

----- 못한 경우에는 -----

-----.

제19조의4(위원회의 제안) -----

-----.

----- 다른 -----
-----.

제19조의5(조례안 예고) ① 의장

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구
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
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
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
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입법예고기간은 5일 이상으
로 한다.

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
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

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
장으로 본다.

제20조(동회의 의제성립) 이 규칙
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동회는 동일자외 1인 이
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20조(동회의 의제 성립) -----

----- 동일자 외 1명 --
----- .

제21조(수정동의) ①·② (생
략)

제21조(수정동의) ①·② (현행
과 같음)

③위원회는 소관사항외의 안건
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

③ ----- 소관 사항 외의 ----
-- 대해서는 -----
----- .

④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
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그 위원
회에 회부한다.

④ -----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 .

제22조(의안, 동회의 철회) ①
(생략)

제22조(의안·동회의 철회) ①
(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

----- 받아야 ---- .

제23조(변안) 변안동의를 본회의
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23조(변안) -----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4조(안건심의) ①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회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 -----

의안이 -----

-----.

제24조(안건 심의) ① -----
----- 심의하는 경우 -----

----- 질의·토론 -----

----- 않은 안건은

----- 안
건은 -----

-----.

② -----
----- 충실한 취지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

-----.

③ (생략)

<신설>

제25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의안의 이송)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제27조(발언의 허가) ①·② (생략)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법 제15조의2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제25조(의안의 정리) -----
----- 불일치
----- 그 밖의
정리가 -----

--.

제26조(의안의 이송) 본회의-----
----- 지
체 없이 -----.

제27조(발언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직접 관
계가 -----

-----.

제28조(발언의 장소) 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0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1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제28조(발언의 장소) ① 의원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

경우에는 -----
--.

② ----- 경우에는 -----
-----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

제29조(발언의 계속) -----

----- 경우에는 -----

-----.

제30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 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 제1항에 -----
----- 의원에게 -----

-----.

제31조(발언횟수의 제한) -----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생략)

②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2조의2(5분 자유발언) ①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5분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30분전까지 그 발언의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 한정하여 ----- . -----

----- 그렇지 않다.

제32조(발언시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분은 ----- 범위에서 ----- .

제32조의2(5분 자유발언) ① ----- 심의 중인 의안 및 청원과 그 밖의 -----

----- 범위에서 ----- 5분 이내 ----- .

② ----- 본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발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5분 자유발언

다.

③의장은 본회의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를 정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되, 발언내용에 의한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요하지 않는다.

④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의중에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토론의 통지) ① (생략)

②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5조(의장의 토론참가) ① (생략)

②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 않는 범위
에서 발언자 수와 -----

----- 대한 -----
----- 등은 -----
-----.

④ ----- 그날 -----

--- 인정하면 개의 중에 -----
-----.

제34조(토론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될 수 있으면 -----

-----.

제35조(의장의 토론 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

의장을 대리한다.

제36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생략)

②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

③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7조(표결의 선포) ① (생략)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8조(표결의 참가) ①표결할 때

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9조(의사변경의 금지)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

제36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 (현행과 같음)

② -----명-----

-----.
----- 질의나 토론의 -----
-----.

③ -----
않고-----.

제37조(표결의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경우에는

-----.

제38조(표결의 참가) -----

----- 따라 -----

-----.

제39조(의사변경의 금지) -----

표결하는 경우 -----
-----.

제40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제41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생략)

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표·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

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42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제40조(표결방법) ① -----

필요할 경우 -----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없으면 -----.

제41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몇 명의 -----
----- 감표위원 -----
----- 점검하고 -----
-----.

③ -----
-----.

----- 않을 ----- 그렇게
하지 않는다.

④ (현행과 같음)

제42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 --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44조(회의록의 작성) ①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6. (생략)

7. 제반 보고사항

8. ~ 10. (생략)

11. 표결 수,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 기명 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 “으로 한다.”

12. ~ 13. (생략)

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제4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회기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날인 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회기 동안만 서명·날인한

---- 각 호에 따라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회의록의 작성) ① -----
----- 다음 각 호의 ----
-----.

1. ~ 6. (현행과 같음)

7. 모든 -----

8. ~ 10. (현행과 같음)

11. -----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 의원 성명

12. ~ 13. (현행과 같음)

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 ① -----
----- 의장, 의장을 -----
-- 부의장, 임시의장과 -----
-- 매 회기 ----- 명 -----
----- 서명 또는 날인 -----

----- 한 회기 ---- 서명 또는 날인 --

다.

② (생략)

제46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전자입시 회의록이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

--.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자구의 바로 고침과 이의의 결정) ① ----- 의원 및 공무원과 그 밖의 ---- 전자 입시 ---- 의회 ----- 자구의 바로 고침을 ----- .

② ----- 바로 고침에 ----- 경우에는 -----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 .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 . 다만, ----- 안녕질서 유지 ----- 관해서는 ----- 배부 ----- .

② ----- 단서에 따라

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절차·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9조(본회의중 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중에는 개최할 수 없다.

신청하였을 없으면 의장은 거절해서는 안된다.

③ ----- 따라 허가 받은 -----
----- 전재·복사하게 해서 -----
는 안 된다.

④ 공개하지 않은 회의의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된다.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방법과 그 밖의 -----
-----.

제49조(본회의 중 위원회 개최) -

----- 본회의 중 -----
-----.

제50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
회에서의 동의는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지 아니하며 동의
자의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
가 된다.

제50조의2(위원회의 제안) 위원
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 의안을 제
출할 수 있으며, 이때 의안의
제출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51조(위원회의 심사) ①위원회
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
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
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
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
만, 위원회의 의결로 창조심사
를 생략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
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③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
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

제50조(위원회에서의 동의) 위원
회에서의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

제50조의2(위원회의 제안) -----

----- 조례안과 그 밖의 -----
----- 이 때 -----
-----.

제51조(위원회의 심사) ① -----
----- 심사하는 경우 -----
----- 전문위
원의-----
----- 질의·토론 -----
-----.

② ----- 심사 -----

----- 대해서는-----
-----.

③ -----
----- 충실한
-----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위원의 발언) ①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생략)

제54조의2(연석회의) ① (생략)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회의에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

관계 공무원이 구청장을 -----
-----.

제52조(위원의 발언) ① -----
----- 같은 의제에 ----- 횃수 -----
----- . -----
----- 경우에는 그러
렇지 않다.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①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제54조의2(연석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시-----

-----.

③ ----- 소관 위원

회의 회의로 한다.

제55조(공청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전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전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전,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④ (생략)

⑤기타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안전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회 -----.

제55조(공청회) ① ----- 전문지식이 필요한 -----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

-----.

② ----- 경비와 그 밖의 ----- 받아야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에 -----
-----.

제5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 -- 심사경과 및 결과와 그 밖의 ---- 서면(이하 이 조에서 “심사보고서”라 한다)으로 ----.

② 심사보고서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

③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7조(위원장의 보고) ①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생략)

③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8조(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 10. (생략)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③ ---- 심사보고서 -----
----- 되기 전 -----

----- 긴급한 경우에는 -----
-----.

제57조(위원장의 보고) ① -----
-- 소관 위원회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경우에는 -----
-----.

제58조(위원회 회의록) ① -----

다음 각 호의 -----.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 ---

②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
----- 기록을 -----

아니 된다.

③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제59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 자료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60조(예산안 심의) ①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 -----

안 된다.

③ -----
-----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59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
----- 회의록과 그 밖의 -----
----- 열람·대출 요구가 -----
----- 심사 또는 감사·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
----- .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해서는 안 된다.

제5장 예산안과 결산 심사

제60조(예산안 심의) ① -----
----- 때에는 본회의 -----
----- 에서 -----
----- 소관 상 -----
----- 임위원회에 ----- 소관 상임 -----
----- 위원회는 -----
----- .

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 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1조(예산안의 수정동의)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제62조(예산안의 의결) ①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각 부분별로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②예산 각 부분의 의사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3조(예산안의 재심요구) 예결

② ----- 첨 부하여 -----

-----.

③ ----- 소관 상임위원회에 -----
-----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에 -----
----- 않을 경우에는 -----
-----.

제61조(예산안의 수정동의) ----

----- 1 이 상의 -----.

제62조(예산안의 의결) ① -----
----- 예산안의 각 부분별로 본회의에-----
-----.

② 제1항의 경우 예산안의 각 부문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예산안의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3조(예산안의 재심요구) ----

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예결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결산안의 심사) ①의회에 결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케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의장이 결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5조(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

----- 본회의의 ----- 한정하여

-----.

제64조(결산의 심사) ① -----
결산-----
---- 소관 상임위원회에 -----
-- 소관 상임위원회는 -----
-----.

② ----- 첨부하여 -----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③ -----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
-----.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제65조(구청장 등의 출석 요구)
① 의회는 본회의의 -----
--- 관계 공무원의 -----
-----.

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65조의2(구정질문) ①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전반 또는 구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질문시간 24시간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자수와 질문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전까지 의원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질문과 답변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

----- 1 이상이 -----
-----.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
----- 관계 공무원 -----.

③·④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구정질문) ① -----
회기 중 -----
-----.

② -----
----- 질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구정질문 요지서 -----
----- 구정질문 요지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
----- 질문순서를 -----
----- 개의 전 -----
-----.

③ ----- 따
라 -----

인정하면 -----
----- 이 때

의원 1인의 질문시간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질문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관국장 등 답변할 것을 요구받은 공무원이 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66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

의원 1명의 ----- 제32조제1항에도 -----

④ ----- 소관 국장 -----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구청장 등”이라 한다)이 답변하여야 하며, -----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계 공무원 ----- 경우에는 ----- 관계 공무원으로 -----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

제66조(구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 -----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질문서를 작성하여 ----- 지체 없이 서면질문서를 -----.

② ----- 서면질문서 -----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질문 답변서로 ----- 그 기간에 -----.

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67조(구청장 등의 발언)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장 의원의 청가·결석·사직 및 윤리·자격심사

제6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결석계를,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타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69조(의원의 사직) 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

----- 기한을 문서(전자문서
를 포함한다)로 -----
-----.

③ (현행과 같음)

제67조(구청장 등의 발언) -----
--- 관계 공무원 -----

-----.

제7장 의원의 청가·결석·사직 및 자격심사

제68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① -----
----- 경우에는 결석신고
서를, 못할 경우에는 -----

-----.

② 그 밖에 -----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
-----.

제69조(의원의 사직) ① ----- 사
직하려면 ----- 서명 또는

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의 윤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피심위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날인 -----
-----.

② -----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 --- 폐회 중-----.

③ (현행과 같음)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 법 제79조에 따라 -----
----- 있을 때에는-----

----- 복사본을 ----
----- 송달하고 --
-----.

② ----- 질병과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제1항의 기일내 -----

-----.

제71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

①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자격상실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회 심사 등) ① -----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 회부하여야 한다.

② ----- 따라 ----- . 다만,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70조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 경우에는 ----- .

② ----- 윤리특별위원회의 ----- 출석하여 ----- .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
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73조(경호) ①의장은 의회의 경
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
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
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기타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
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의원
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장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
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
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 출석하여 발언하게 -----.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경호) ① -----
----- 필요한 경우에는 ---
----- 받아 -----

-. ----- 긴급한 경우에는 ----

--.

② (현행과 같음)

③ 그 밖에 --- 경호에 관하여
필요한 -----.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
----- 회의
장에서 다음 각 호와 -----
해서는 안 된다.

1. -----

----- 행위
2. -----

간행물, 그 밖의 -----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킁연

5. (생략)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
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는 의
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
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생략)

제75조(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 회의장안에서
의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
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
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
다.

제7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
장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
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
장이 허가한 자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3. ----- 않은

4.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
우는 행위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 문란하게 하는 ----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그날의 회
의에서 -----
-----.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장·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는 의원) 회의장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나 제
지 또는 발언취소 요구에 따르
지 않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
로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
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76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
장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과 그
밖의 -----
----- 자 외에는 ----
-----.

제77조(방청) ①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신 설>

②기타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8조(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9장 징 계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

제77조(방청) ① -----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방청에 필요한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8조(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① ----- 한정하여 회의장에서의 -----.

② ----- 대해서는 -----.

제9장 윤리심사와 징계

제79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자” 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 라 한다) 또는 법 제86조에 -----
----- 경우에는
-----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
---- 제1항에 따라 -----
----- .

③ -----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
----- 그 사유를 -----
----- . ----, 법 제83조에 따라 -----
----- 필요로 하지 않으며 --
----- 요구서 -----
----- .

④ ----- 윤리심사 요구 또는 징계 요구 ----- 의장은 -----

한다.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제8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7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⑤ ----- 제4항에도 ----- 징계대상자의 행위 -----
-----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 부의 시한은 제80조제1항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시한과 같다.

제80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일 이내(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2. 제79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79조제4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서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79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회의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1조(의사의 비공개)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2조(심문 및 변명)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의

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 요구 또는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폐회기간 중에----- 다음 회기의회의 집회날부터 3일 이내에-----.

제81조(징계 등 회의의 비공개) 윤리심사 또는 징계 -----
----- 않는다.

제82조(심문 및 변명) ① -----
-----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

②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는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

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10장 보 칙

제84조(기간의 가산일) 이 규칙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85조(규정 등 제정) 의회는 이 규칙외에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의 의결과 선포) ① -----

----- 윤리심사-----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 의결하여야 -----.

② ----- 경우에는 -----.

제10장 보 칙

제84조(기간의 계산) 이 규칙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5조(규정 등 제정) ----- 규칙 외에 ----- 불일치되지 ----- 범위에서 -----.